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700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5501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8.
판 결 선 고	2019. 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취득세 39,130,560원, 농어촌특별세 1,668,520원, 지방교육세 3,337,050원의 부과처분,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26,042,960원, 농어촌특별세 1,586,380원, 지방교육세 1,269,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3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사용하는 것"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2014. 1. 1. 법률 제12175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직접 사용'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